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및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[별표4]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1. 06.

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1. 건 명 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 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및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[별표4]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김○호	51.02.13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취소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통지	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	폐문부재	충남 서산시 예천3로 10, 205동 106호

4. 공고기간 : 2023. 11. 06. ~ 2023. 11. 21. (14일간)
5. 기타사항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강상묵(Tel 041-620-951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